

후시 모를 내일을 위해!

농업인(자영업자) 고용보험



가입 대상

-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,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(농어업경영체 등록 가능)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
 - 「고용보험법」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(소규모공사, 가사서비스업 등)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
 -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

신청 방법

- 근로복지공단에 「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」를 제출
 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.comwel.or.kr 에서 신청
 -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에 신청서 제출

기준보수

(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)

-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“기준보수” 중에서 본인이 선택
 - [보험료] 선택한 기준보수 × 보험료율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: 0.25%, 실업급여: 2%)
 - [구직급여일액] 기초일액 × 60%
 - *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,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

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

(단위: 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구직급여	1,092,000	1,248,000	1,404,000	1,560,000	1,716,000	1,872,000	2,028,000

보험료 납부

-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 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, 건강보험공단이 징수
-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 - [대상]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
 - [내용] 최대 5년간 1~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80%, 3~4등급은 60% 지원, 5~7등급은 50% 지원
 - [절차]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(다만,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)
 - * 지자체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(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)도 중복수혜 가능

구직급여

지급요건

-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
- 전년대비 매출액 20% 감소, 건강악화,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, FTA 폐업지원 농업인, 동식물방역, 농업 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
 - * 신청 시 폐업신고서, 폐업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(매출·비용 증빙자료,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)를 제출해야 함
 - *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,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, 자기 사정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
-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
지급수준 및 기간

- 기초일액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~210일까지 지급

가입기간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급여일수	120일	150일	180일	210일

신청절차

-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‘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’ 제출,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~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

직업능력개발 지원

(국민내일배움카드)

지원대상	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지원수준	<p>[훈련비] 1인당 5년간 300~5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기적중 훈련과정,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,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과정은 1회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* 기본 300만 원 지원+ 취업취약계층 등 200만 원 추가지원 → 취업률,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(0~55%) <p>[훈련장려금] 총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 시 1일 5시간 미만은 9천 원, 5시간 이상은 18천 원 지원(단위기간 80% 이상 출석 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
신청방법	<p>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로 신청 <p>훈련과정 수강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: 온라인(고용24)·오프라인(고용센터)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→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: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*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지원내용,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

